성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8. 2 .
제 출 자 : 정영길의원외 1인

1. 제안이유

○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및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책무,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여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한 군민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의 초청, 표창,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해 위문 격려 등 예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보조금의 신청, 사업비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성주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

바. 타 법령·조례에 의한 지원과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 례 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제6조,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나. 기타사항 : 예산부서와 협의

※ 지자체별 조례제정 현황, 의견청취 실시, 관련부서(예산 및 사회)의견 등

성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및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각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성주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성주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5.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성주군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한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